모유수유 권리 안내문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기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유할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모유수유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모유수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모유수유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의료진과 보육 제공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

모유수유를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귀하는 이 안내문에 설명된 권리를 모두 보장받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용 지불 방식과 관계없이, 다음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연령, 인종 또는 피부색
-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출신 국가, 신념 또는 종교
- 장애 여부 또는 임신 관련 건강 상태
- 가정폭력 피해 여부
-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 성별, 성적 지향
-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태(기혼, 미혼, 임신 여부, 자녀 유무 등)
- 군 복무 여부
- 체포 기록 여부

출산 병원과 출산 센터는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산모 또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권리 중 산모 또는 아기에게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요청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 전:

뉴욕주 Article 28 산전 진료 제공기관에서 산전 출산 교육을 받는 경우, 이 권리 안내문(Bill of Rights)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는 출산 병원, 출산 센터, 병원 클리닉, 진단·치료 센터가 포함됩니다.

출산 전 등록 또는 입원 시, 출산 병원과 출산 센터는 각 환자 또는 환자가 지정한 개인 대리인에게 두 가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권리 안내문이며, 다른 하나는 출산 관련 정보 안내서입니다. 개인 대리인이란 환자를 대신해 의사 표현이나 결정을 돕도록 환자가 지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본인과 아기를 위한 모유수유의 이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수유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모유수유가 산모와 아기에게 제공하는 영양적, 의학적, 정서적 이점
-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 방법
-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법



출산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서:

출산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 있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관계없이, 출산 직후 아기와 함께 있을 권리
- 하루 24시간 아기와 같은 병실에서 함께 지낼 권리
- 출산 후 1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할 권리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권리
    - 직접 수유가 어려운 경우, 유축하거나 손으로 짜낸 모유를 아기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낮과 밤 언제든지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권리

도움 및 정보 제공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모유수유 지원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
- 아기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유수유 지원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
- 현재 모유수유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개선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권리
- 모유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안내받고, 해당 약물 사용을 거부할 권리
- 수유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의료진 또는 아기의 의료진(소아과 의사)이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알 권리
- 요청 시, 가족 또는 친구가 의료진으로부터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아기에게 젖병 수유나 공갈젖꼭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
- 아기가 모유수유 중이며, 젖병 수유나 공갈젖꼭지 또는 어떠한 인공 젖꼭지도 제공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한 안내문을 아기 침대에 부착할 권리

참고: 출산 후 퇴원한 뒤, 본인이나 아기가 출산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경우, 병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모유수유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제공
- 병원용 전동 유축기 및 모자동실 시설 제공



출산 병원 또는 출산 센터 퇴원 시:

출산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서 퇴원할 때,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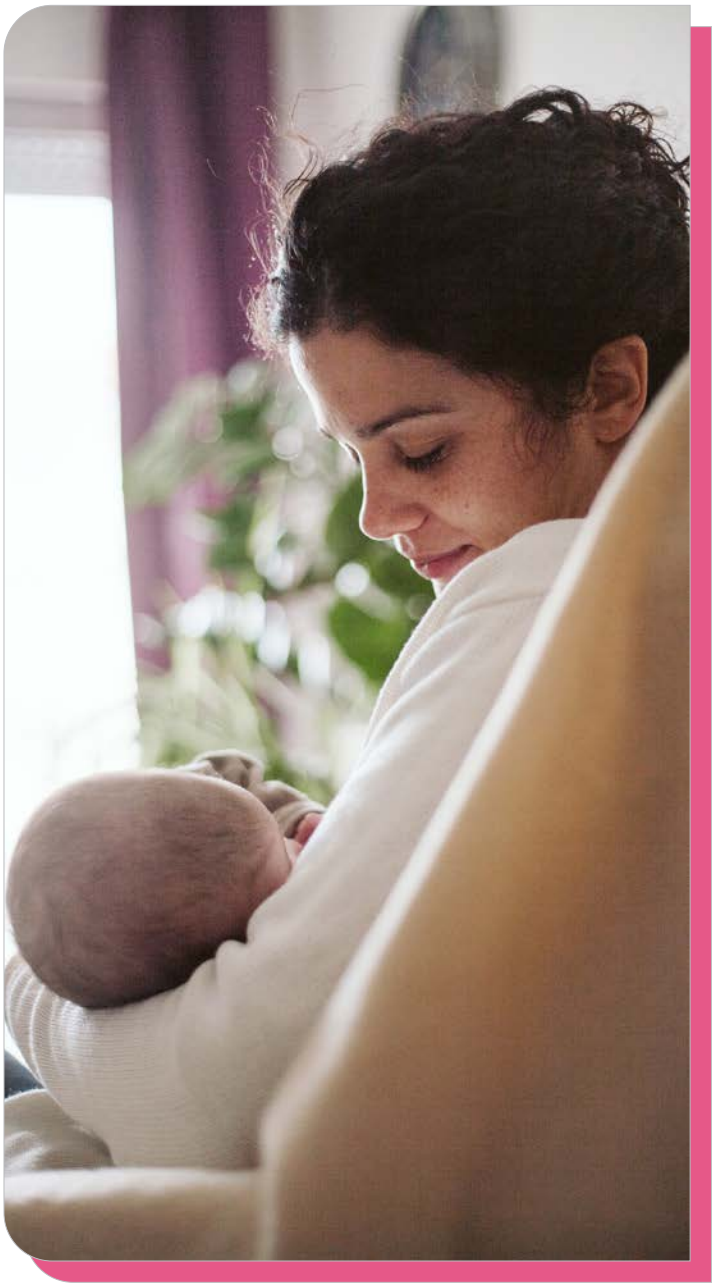
- 상업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인쇄물 또는 디지털(온라인) 모유수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분유, 분유 쿠폰, 분유 선물이 포함된 퇴원 키트를 받지 않을 권리. 단, 귀하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요청했고 시설에서 제공 가능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 또한 아기 담당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공을 지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내 모유수유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모유수유 전문가, 지원 그룹, 유축기 이용 가능 여부 등 포함)
- 아기 담당 의료진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또한 퇴원 후 후속 진료 예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유를 안전하게 유축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기 수유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공공장소든 사적인 공간이든, 본인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권리. 이는 뉴욕주 민권법(Civil Rights Law) 제79-e조의 모유수유 권리 보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성별 및 가족 상태(기혼·미혼, 임신 여부, 자녀 유무 등)에 근거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또는 보육시설에서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권리. 해당 환경은 모유수유 또는 모유 제공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뉴욕주 노동법(Labor Law) 206-c에 따라, 출산 후 최대 3년 동안 직장에서 모유를 유축할 수 있도록 3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받을 권리. 유축에 30분 이상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다른 휴식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유 유축에 30분 이상이 필요한 경우, 다른 휴식 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며, 모유를 유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도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직장에서 모유를 유축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직장에서 성별, 임신 관련 상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해당 법률은 뉴욕주 노동법(Labor Law)과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입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입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출산 병원 또는 출산 센터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방법:

시설 민원 양식 작성:
apps.health.ny.gov/surveyd8/facility-complaint-form

전화: 1-800-804-5447

이메일: hospinfo@health.ny.gov

귀하의 **직장**에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산하 노동기준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방법:

전화: 1-888-52-LABOR (1-888-52-52267)

이메일: LSAsk@labor.ny.gov

웹사이트 방문: on.ny.gov/breastmilkexpression

민권 관련 민원은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접수하거나 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 신고 방법:

전화: 1-844-NYS-DHR1 (1-844-697-3471)

웹사이트 방문: dhr.ny.gov/complaint

권리 안내문 업데이트

2026년, 뉴욕주 노동법 제206-c조에 따라 보건부는 모유수유 권리 안내문(Breastfeeding Mothers' Bill of Rights)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직장에서 모유를 유축할 수 있도록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가족 형태, 성 정체성,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기 위해 성중립적 표현(예: chestfeeding, parent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권리 안내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alth.ny.gov/publications/2028/

NEW YORK STATE | Department of Health